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년 6월 30일)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2013)에 관한

PCA 사건 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

중재판정문 정정 및 해석 신청에 관한 결정

---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K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3년 9월 1일

## 목차

I.	서문.....	1
II.	피청구국의 신청 .....	2
	A. 정정 신청 .....	2
	1. 피청구국의 입장 .....	2
	2. 청구인의 입장 .....	5
	B. 해석 신청 .....	7
	1. 피청구국의 입장 .....	7
	2. 청구인의 입장 .....	8
III.	청구인의 신청 .....	9
	A. 청구인의 입장 .....	9
	B. 피청구국의 입장 .....	10
IV.	중재판정부의 분석 .....	11
	A. 피청구국의 신청 .....	12
	1. 피청구국의 정정 신청 .....	12
	2. 피청구국의 해석 신청 .....	15
	B. 청구인의 신청 .....	17
V.	결정.....	20

## I. 서문

1. 2023 년 6 월 20 일, 중재판정부는 본 중재의 판정(이하 “중재판정문”)을 선고하였고, 중재판정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sup>1</sup>

995. 전술한 이유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a. 피청구국은 협정을 위반하였다;
  - b. 피청구국에게 피청구국의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야기된 손해의 배상으로서 53,586,931.00 달러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 c. 피청구국에게 2015 년 7 월 16 일부터 본 판정일까지 연 복리로 위(b)항의 금액에 대하여 5%의 비율로 판정 전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 d. 피청구국에게 본 판정일부부터 위(b)항의 금액을 전액 지급할 때까지 연 복리 5%의 비율로 판정 후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 e.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중재비용을 부담한다;
  - f. 청구인에게 피청구국이 본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 비용 3,457,479.87 달러와 본 판정일로부터 30 일 이후부터 연 복리 5%의 비율의 이자를 피청구국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 g. 피청구국에게 청구인이 본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 비용 28,903,188.90 달러와 본 판정일로부터 30 일 이후부터 연 복리 5%의 비율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 h. 그 밖의 모든 청구와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
2. 2023 년 7 월 18 일, 피청구국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2013)(이하 “UNCITRAL 규칙”) 제 37 조 및 제 38 조에 따라 중재판정문 정정 및 해석 신청서(이하 “피청구국의 신청”)를 제출하였다.
  3. 2023 년 7 월 20 일, 청구인은 UNCITRAL 규칙 제 38 조에 따라 중재판정문 정정 신청서(이하 “청구인의 신청”)를 제출하였다.
  4. 2023 년 8 월 1 일,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신청에 대한 답변(이하 “청구인의 답변”)을 제출하여, 중재판정부가 (i) 피청구국의 신청 전부를 기각하고; (ii) 피청구국의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 비용을 이자와 함께 미국 달러화로 청구인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였다.

---

<sup>1</sup>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 결정에 사용된 약어와 정의는 판정문에서 소개된 것과 동일하다.

5. 2023 년 8 월 4 일,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답변(이하 “**피청구국의 답변**”)을 제출하여, 중재판정부가 (i) 청구인의 신청 전부를 기각하고; (ii) 청구인의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였다.

## II. 피청구국의 신청

6. 피청구국은 두 가지 요청을 한다. 첫째,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세전 금액의 사용을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세후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sup>2</sup> 둘째, 피청구국은 UNCITRAL 규칙 제 37 조에 따라 중재판정문 제 995(c)항에서 지급을 명한 판정 전 이자의 통화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다.
7.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정정 요청이 UNCITRAL 규칙 제 38 조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재판정문에는 해석이 필요한 모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A. 정정 신청

#### 1. 피청구국의 입장

8. 피청구국은 UNCITRAL 규칙 제 38 조 제 1 항에 규정된 “계산상 오류”의 범위가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보다 넓으며 계산 착오, 잘못된 데이터의 사용, 중재판정부의 비용 평가에서 데이터 누락, 또는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더욱이, 오류는 “중재판정부의 문면상 분명한 것”이어야 하고, 오류의 정정은 “중재판정부의 의도를 변경하기보다는 중재판정부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sup>4</sup> 따라서, 피청구국은 UNCITRAL 규칙 제 38 조 제 1 항에 따른 정정 가능한 오류의 허용 범위는 서로 구별되며, 문서기록 상의 오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sup>5</sup>

---

<sup>2</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7 항.

<sup>3</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29 항, Jan Paulsson & Georgios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제 38 조, 제 5 항 (CLA-205) 인용.

<sup>4</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11 항, N. Blackaby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7th ed. 2023), 제 10.14 항 (RLA-176); L. Olavo Baptista, Correction and Clarification of Arbitral Awards in Arbitration Advocacy in Changing Times (ICCA Congress Series No. 15) (A. Jan van den Berg ed., 2011), 275, 283 면 (RLA-174);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2022), 제 24.03 항 (RLA-175) 인용.

<sup>5</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28 항.

9. 상기 근거로, 피청구국은 “세전 금액을 사용하고자 명시한 중재판정부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세후 금액(잘못된 데이터)을 중재판정부가 뜻하지 않게 사용한 것(반영하고자 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정정” 하고자 한다.<sup>6</sup>
10. 구체적으로,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한국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대상인 청구인 소유 삼성물산 주식(이하 “매수청구 주식”)의 손실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산식의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에 대하여 세전 금액을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중재판정부의 명시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세후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sup>7</sup> 피청구국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재판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중재판정부의 분석을 지적한다:
- (a) 중재판정부는 “세전 금액이 일관성을 위해 고려할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Mr. Boulton 은 청구인의 거래손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금액도 고려하였다”고 명시하였다;<sup>8</sup>
  - (b)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보유한 매수청구 주식의 가치(535,881,584,700 원)와 매수청구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대금(456,620,599,950 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금액을 사용하였다;<sup>9</sup> 그리고
  - (c)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02,634,943 원”을 수령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10</sup>
11. 피청구국에 따르면, 추가지급금의 세후 금액을 사용한 것은 “추가지급금 금액(총액과 1 주당 금액 모두의 측면에서)이 과소 평가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산술적으로) 가정적 시나리오 가치와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의 차액(즉, 매수청구 주식에 관한 청구인의 손실

---

<sup>6</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30 항.

<sup>7</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 10-11 항. 피청구국은 매수청구 주식과 관련된 청구인의 손실을 계산한 중재판정부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매수청구 주식으로 인한 총 손실 = 가정적 시나리오 가치 - (매매대금 + 추가지급금). 피청구국의 신청, 제 9 항.

<sup>8</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10 항, 중재판정문, 제 936 항 인용.

<sup>9</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10 항, 중재판정문, 제 935 항 인용.

<sup>10</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11 항, 중재판정문, 제 906 항 인용.

금액)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게” 하였다.<sup>11</sup>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인정된 손해액이 과대 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sup>12</sup> 따라서,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에 “매수청구 주식의 매도를 통하여 청구인이 얻은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을 ...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이용하여 재계산할 것 및 그에 상응하여 추가지급금 또는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 금액을 잘못 판시하거나 그와 같이 잘못된 금액으로부터 도출된 다른 잘못된 금액을 판시한 모든 판정 부분의 정정을 요청”한다.<sup>13</sup>

12.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심리 후 주장서면에서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sup>14</sup> 이 값은 EALP와 삼성물산 간의 합의서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5</sup>

$$\text{추가지급금} = (\text{제시 가격을 초과한 1 주당 가액} - \text{한화 57,324 원}) \times 7,732,779 \text{ 주}$$

13. 피청구국은 또한 (i) 구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재평가가격을 1 주당 66,602 원으로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이 합의서 상 추가지급 사유로 발생하였고; (ii) 1 주당 66,602 원인 재평가가격이 합의서 상 제시 가격인 57,234 원보다 높은 금액이었다고 설명한다.<sup>16</sup> 따라서, 피청구국은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65,902,634,943 원 대신) 72,440,473,672 원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피청구국에 따르면, “매수청구 주식과 관련한 청구인의 손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재판정부가 사용하고자 의도하였던 추가지급금의 정확한 수치”이다.<sup>17</sup>

$$\begin{aligned} \text{추가지급금} &= \text{한화 9,368 원} [\text{제시 가격을 초과한 1 주당 가액}] \times 7,732,779 \text{ 주} [\text{청구인의 매수청구 주식 수}] \\ &= \text{한화 72,440,673,672 원} \end{aligned}$$

---

<sup>11</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12 항.

<sup>12</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12 항.

<sup>13</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30 항(원문 강조표시).

<sup>14</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1 항.

<sup>15</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15-16 항,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와 삼성물산 주식회사 사이의 주식매수가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2016년 3월 15일, 제 2.4 조(C-450) 인용.

<sup>16</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17-18 항. 피청구국의 심리 후 재반박서면, 2022년 4월 13일, 제 234 항 참조.

<sup>17</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19-20 항.

14.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세전 금액 계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정확성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sup>18</sup>
15. 피청구국은 “정확한”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인 한화 72,440,673,672 원(즉, 1주당 9,368 원)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여 중재판정문에서 “추가지급금 또는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 금액을 잘못 판시하거나 그와 같이 잘못된 금액으로부터 도출된 다른 잘못된 금액”을 사용한 모든 계산에 대하여 일련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9</sup>
16. 결론적으로,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투자가치 손실”은 (i) “68,744,114,123 원”에서 “62,206,067,478 원”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미국 달러화 환산액에 있어서 (ii) “53,586,931.00 달러”는 “48,490,251.66 달러”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0</sup>
17. 피청구국은 이러한 정정 요청이 중재판정부의 실질적인 방법론 또는 접근 방식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다.<sup>21</sup> 오히려, 자신의 요청은 단지 “중재판정문의 문면상 분명한” “계산상 오류” 정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중재판정문의 다른 부분에 기계적 조정”을 요청하여 손해계산에 있어서 중재판정부가 명시한 근거와 방법론에 일치시키고자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sup>22</sup> 따라서, 피청구국에게는 “필요한 정정에 따르는 약간의 복잡함”은 자신의 정정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sup>23</sup>

## 2. 청구인의 입장

18. 청구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UNCITRAL 규칙 제 38 조에 의해 “정정이 허용된 ‘오타자’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계산상 오류만을 정정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sup>24</sup> 따라서 정정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은 중재판정문에서 언급된 날짜, 이름 및 주소를

---

<sup>18</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31 항.

<sup>19</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30-31 항; 피청구국의 답변, 제 31 항.

<sup>20</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0 항, 중재판정문, 제 948, 952 항 인용.

<sup>21</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30 항.

<sup>22</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26, 31 항.

<sup>23</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31 항.

<sup>24</sup> 청구인의 신청, 제 6 항; 청구인의 답변, 제 5-6 항.

변경하거나, 숫자의 합이 안 맞은 경우, 혹은 소수점과 쉼표를 반대로 쓴 경우 등 “단순히 기계적”인 오류이다.<sup>25</sup>

19. 상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정정 신청이 두 가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20. 첫째, 피청구국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적용한 추가지급금의 세후 가액은 세전 가액의 사용을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sup>27</sup>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원천징수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한 후”의 추가지급금을 명시한 것을 상기하면서, 중재판정부가 “의식적으로” 또 “고의로” 세후 가액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sup>28</sup>
21. 또한, 청구인은 추가지급금의 세후 가액을 반영한 것은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동일 주식의 매수·매각 대금 가액을 일관적인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므로, 일견 논리적인 접근법”이었다고 주장한다.<sup>29</sup>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추가지급금이 아닌) 순거래손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가치를 반영했던 Mr. Boulton 의 산정방식을 언급하였던 점을 지적한다.<sup>30</sup> 반대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일관성이나 그 어떠한 다른 이유로 추가지급금의 세전 가액을 적용하려 했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고 설명한다.<sup>31</sup>
22.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 추가지급금의 세전 가액이 제공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국이 “자신의 누락”을 “정정 신청의 외관을 취한” 중재판정 후 서면으로 바로 잡으려 하고 있지만,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2</sup>

---

<sup>25</sup> 청구인의 신청, 제 6 항; 청구인의 답변, 제 7-8 항.

<sup>26</sup> 청구인의 답변, 제 10 항.

<sup>27</sup> 청구인의 답변, 제 11 항.

<sup>28</sup> 청구인의 답변, 제 13 항, 중재판정문 제 906 항 인용.

<sup>29</sup> 청구인의 답변, 제 14 항.

<sup>30</sup> 청구인의 답변, 제 14 항.

<sup>31</sup> 청구인의 답변, 제 15 항.

<sup>32</sup> 청구인의 답변, 제 15 항.



23. 둘째, 설령 의도치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구하는 정정 요청은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와 유사한 계산상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33</sup> 오히려, 피청구국의 정정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추가지급금의 세전 가액을 스스로 도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값을 사용하여 손해액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중재판정문에서 다수의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sup>34</sup> 따라서, 청구인에게 있어서 피청구국의 신청은 “사실상 손해산정에 대한 제 3차 심리 후 서면을 제출하는 것과 가깝고” UNCITRAL 제 38 조에서 허용하는 “엄격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sup>35</sup>
24.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1996년 영국 중재법 제 68 조에 따라 중재판정문의 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국이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중재판정문 내의 “중대한 하자”가 취소 신청 근거 중 일부임을 지적한다.<sup>36</sup>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제 38 조에 의한 정정을 통하여 손해 계산 방식에 그와 같은 새로운 단계를 도입할 경우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sup>37</sup>

## B. 해석 신청

### 1. 피청구국의 입장

25. 피청구국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먼저 “판정 전 이자에 적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고 명시하고, 그 후에 청구인의 손실을 반영한 금액에 대해 5%의 비율로 판정 전 이자를 미국 달러화로 지급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모호함이 존재한다.<sup>38</sup> 피청구국은 이러한 두 판시는 두 가지 상충되는 해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a) 피청구국은 외화 환산

---

<sup>33</sup> 청구인의 신청, 제 10 항; 청구인의 답변, 제 17 항.

<sup>34</sup> 청구인의 신청, 제 8 항; 청구인의 답변, 제 16-17 항.

<sup>35</sup> 청구인의 신청, 제 9 항; 청구인의 답변, 제 6 항.

<sup>36</sup> 청구인의 신청, 제 11 항.

<sup>37</sup> 청구인의 신청, 제 11 항.

<sup>38</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6-27 항.

없이 미화 53,586,931 달러에 대하여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해야 하거나;  
(ii) 피청구국은 68,744,114,123 원에 대하여 판정 전 이자를 미국 달러화로 지급해야 한다.<sup>39</sup>

26. 피청구국은 판정 전 이자가 원화 금액에 적용되지만 미국 달러화로 지급되어야 할 경우,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변환할 기준일에 대해서도 모호함이 있다고 주장한다.<sup>40</sup>
27. 따라서,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995(b)항과 995(c)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청구국]에 판정 전 이자를 미화로 계산하라고 명하는 것을 의도한 것인지, 혹은 961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정 전 이자를 한화로 계산할 것을 명하는 것을 의도한 것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후자라면 미화로의 환전 기준일도 추가로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sup>41</sup>

## 2. 청구인의 입장

28.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문에서 UNCITRAL 규칙 제 37 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호성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sup>42</sup>
29. 판정 전 이자에 적용된 통화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서 원화를 언급한 것은 단지 한국의 표준 법정이율인 연 복리 5%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sup>43</sup> 청구인에 따르면, 이 것은 “판정 전 이자의 확정 금액이 실제로 원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아니었다”.<sup>44</sup> 사실, 그러한 결정은 “청구인이 미국 달러화로 판정한 배상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중재판정부의 결정과 양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45</sup>

---

<sup>39</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7 항.

<sup>40</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7 항.

<sup>41</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8 항.

<sup>42</sup> 청구인의 답변, 제 20-21, 23 항.

<sup>43</sup> 청구인의 답변, 제 24 항.

<sup>44</sup> 청구인의 답변, 제 24 항(원문 강조표시).

<sup>45</sup> 청구인의 답변, 제 24 항, 중재판정문, 제 961 항 인용.

30. 청구인은 또한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 적절한 날이 본 판정일”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원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 기준일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46</sup>
31. 결국,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판정 전 이자를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계산되든지, 아니면 원화로 먼저 계산된 뒤 미국 달러화로 변환되는지와 관계없이, 어차피 동일한 금액의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문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sup>47</sup>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국이 언급한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또한 정확히 같게 도출됨을 의미”한다.<sup>48</sup>

### III. 청구인의 신청

32. 만약 중재판정부가 방법론적 정정 역시 UNCITRAL 규칙 제 38 조의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전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중재판정부의 의도와 일치하도록, 판정 전 이자 산정에 있어서 중재판정부가 범한 “방법론적 오류” 정정할 것을 요청한다.<sup>49</sup>
33.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선택한 방법론을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신청은 UNCITRAL 규칙 제 38 조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A. 청구인의 입장

34.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UNCITRAL 규칙 제 38 조의 허용 범위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정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이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긴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자 산정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다.<sup>50</sup>

---

<sup>46</sup> 청구인의 답변, 제 25 항, 중재판정문, 제 952 항 인용.

<sup>47</sup> 청구인의 답변, 제 26 항.

<sup>48</sup> 청구인의 답변, 제 26 항.

<sup>49</sup> 청구인의 신청, 제 17 항.

<sup>50</sup> 청구인의 신청, 제 12-14, 18 항, 중재판정문 제 961 항 인용.

35. 청구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손실에 대한 일부 차감은 2015년 7월 16일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순손실액인 687억 4,000 만원에 대한 이자가 2015년 7월 16일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을 때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sup>51</sup> 이에 따라,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이 2015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실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음으로써 이자 계산 방식에 대한 오류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중재판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에게 ‘전부 배상’을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한다.<sup>52</sup>
36.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의도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실제로 청구인이 2015년 7월 16일에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771,026,741,100 원이었고, “그중 일부만이 몇 개월 내지 몇 년 간, 즉 (i) 2015년 9월 17일부터 25일 사이(179,759,400,000 원), (ii) 2016년 3월 18일(456,620,599,950 원), 및 (iii) 2022년 5월 12일(65,902,634,943 원) 수 회에 걸쳐서 회수”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재산정하여줄 것을 요청한다.<sup>53</sup>

## B. 피청구국의 입장

37.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요청이 UNCITRAL 규칙 제 38조의 의미 내에서 “계산상 오류”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정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없음을 주장한다.<sup>54</sup>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이러한 인정이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기에 충분한 이유라고 주장한다.<sup>55</sup>
38.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재판정문에서 UNCITRAL 규칙 제 38조에 따라 정정될 수 있는 문면상 분명한 “오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sup>56</sup> 대신, 청구인은 “판정 전 이자에 대한

---

<sup>51</sup> 청구인의 신청, 제 17 항.

<sup>52</sup> 청구인의 신청, 제 17 항.

<sup>53</sup> 청구인의 신청, 제 15-17 항. 청구인의 신청 제 19 항 참조.

<sup>54</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4, 13 항.

<sup>55</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3 항.

<sup>56</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14 항.

중재판정부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인의 손실 원금에 대한 판정을 변경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오류를 “생산”하려고 시도하였다.<sup>57</sup>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손실이 “위반이 없었을 경우의 시나리오에서 청구인의 주식 [즉, 가치평가일은 2015 년 7 월 16 일의 삼성물산 주가] FMV 내지 공정시장가격과 청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여 받을 실제 매도 수익금의 차액”으로 국한되었다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강조한다.<sup>58</sup> 그러나 피청구국은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달리, 청구인이 제안한 방법론은 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원금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sup>59</sup> 따라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손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sup>60</sup>

39. 설령주장된 오류가 UNCITRAL 규칙 제 38 조에 따라 정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제안한 손해 산정 방식을 “결합”이 있고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sup>61</sup> 청구인이 제안한 방식은 (a) 4 개의 기간 중 첫 두 기간동안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총 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한 이자를 청구인에 지급하고; (b) 이자가 매년 복리로 계산된다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와는 반대로, 모든 이전 기간의 원금에 대한 복리 이자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간의 원금에 합산되게 한다.<sup>62</sup> 피청구국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는 처음 두 기간의 이자를 세 번째와 네 번째 기간의 원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전의 오류를 가중시킨다.<sup>63</sup>

#### IV. 중재판정부의 분석

40. 중재판정부는 먼저 피청구국의 정정 및 해석 신청을 다룬 다음, 청구인의 정정 신청을 다룰 것이다.

---

<sup>57</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16 항.

<sup>58</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8, 18-19 항, 중재판정문 제 919 항 인용. 중재판정문 제 932 항 참조.

<sup>59</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13 항.

<sup>60</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7-9, 20-21, 23 항.

<sup>61</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22 항.

<sup>62</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22 항.

<sup>63</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22 항.

A. 피청구국의 신청

1. 피청구국의 정정 신청

41. 관련 조항은 “중재판정문의 정정”을 다루는 UNCITRAL 규칙 제 38 조이다. 제 38 조는 아래와 같다:
1.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문의 계산상 오류,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오류 또는 누락을 정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정정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의 통지 후 30 일 이내에 스스로 이와 같은 정정을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정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판정문의 일부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제 2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2. 피청구국의 신청이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제출되었으므로 시기적절하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43.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에 관하여, 피신청국의 정정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UNCITRAL 규칙 제 38 조 제 1 항의 허용 범위 안에서 “계산상 오류”를 범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정정의 목적은 중재판정을 중재판정부가 의도한 결정에 합치시키기 위함”이다.<sup>64</sup>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본 사건에서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세전 금액의 사용을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실수로 세후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다.<sup>65</sup>
44.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여 UNCITRAL 규칙 제 38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기계적·사무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sup>66</sup> 청구인에 따르면, “[제 38 조]에서 허용코자 하는 ‘계산상’ 오류는 동 조항에 의해 마찬가지로 정정이 허용된 ‘오탈자’ 등과 동등한 수준의 오류”인 것이다.<sup>67</sup>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정정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자신의

---

<sup>64</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6 항.

<sup>65</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7 항.

<sup>66</sup> 청구인의 답변, 제 2(i)항.

<sup>67</sup> 청구인의 답변, 제 5 항.

결정을 재평가해야 하는 바, 결국 손해 산정에 대한 제 3 차 심리 후 서면을 제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8</sup>

45. 당사자들의 법적 주장과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법적 근거들을 고려한 결과, 중재판정부는 UNCITRAL 규칙 제 38 조 제 1 항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산상 오류”와 “문서기록이나 타자 상의 오기”를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Petrolane, Inc. v. Islamic Republic of Iran* 사건에서 이란·미국 청구 판정부가 판시한 바와 같이,

[1976년 UNCITRAL 규칙에서 적용되어, 제 36 조, 현재는 제 38 조에 수정없이 적용된] 판정부 규칙에서는 (a) 물질적 또는 실체적 오류 (예를 들어, 계산상의 오류), 그리고 (b) 원문상의 오류 (예를 들어,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인쇄할 때 발생한 오류, 또는 문법적인 성격의 오류) 등 두 가지 주요 범주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문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당 지문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와 관련하여서는, 실체적 또는 원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오류를 포함한다.<sup>69</sup>

46.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계산상의 “실질적 또는 실체적” 오류는 UNCITRAL 규칙 제 38 조 제 1 항의 의미 내에서 “계산상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제 38 조 제 1 항은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와 “유사한” 오류만을 다루지 않고, 계산상의 실질적 또는 실체적 오류의 정정도 허용한다.
47.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 중재판정부는 앞서 해석한 바와 같이 UNCITRAL 규칙 제 38 조 제 1 항의 의미 내에서 계산상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 피청구국이 지적한 바대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청구인이 합의서에 따라 매수청구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배상액 계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의 세전 금액을 일관되게 반영할 의도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합의서 제 1.1 조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매수청권을

---

<sup>68</sup> 청구인의 답변, 제 2(i)항.

<sup>69</sup> *Petrolane, Inc. v. Islamic Republic of Iran*, Dec. No. DEC 101-131-2 (25 November 1991), 27 Iran-US CTR 264, 265 (1199-II) 재발행, 11 면(CLA-211). 판정부 규칙 제 36 조의 첫번째 문장은 UNCITRAL 규칙 제 38 조의 첫 문장과 실질적으로 같다. Luis Olavo Baptista, *Correction and Clarification of Awards*, ICCA Congress Series No. 15 (Rio 2010), *Arbitration Advocacy in Changing Times*, 281 면(RLA-174) (“실질적인 오류는 특정 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오류와 같은 계산상 실수를 포함한다.”); Jan Paulsson & Georgios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347 면(CLA-205) (제 38 조 제 1 항에 기재된 오류의 세 가지 범주는 모두 부주의한 실수의 개념에 해당한다 ... 따라서 그 오류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서의 지적 오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참조.

행사하여 수령한 대금과 합의서 제 2.4 조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 종결 이후 수령한 추가지급금의 합계로 산정하였다.

48. 그러나, 청구인의 심리 후 재반박서면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한화 65,902,634,943 원)은 “원천징수 및 기타 기타 세금을 공제한 후”인 금액이었다.<sup>70</sup> 청구인은 자신의 서면에서 세전 가액을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가액은 기록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제공되지 않았지만(실제로 당사자들의 심리 후 재반박서면은 동 사안에 대하여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된 실질적인 서면이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언급한대로 합의서 제 2.4 조에 명시된 산식을 통해 해당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해당 산식은 다음과 같다:

“Top Up 지급액”이라 함은, 아래 A 와 B 를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

(i) A = (a) 삼성물산 또는 기타 다른 삼성물산 그룹의 구성원 또는 다른 삼성물산 측 개인 또는 그 각각의 지정인에 의한, 본건 합병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구 삼성물산의 주주 또는 과거 주주(또는 그 계열사 또는 그 각각의 임원들 또는 지배자들)로부터의 구 삼성물산 주식(현재는 삼성물산 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또는 (b) 기타 다른 Top Up 사유의 거래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이루어진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위와 같이(대가 또는 가치 이전으로) 지칭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손실, 비용 또는 책임에 대한 보상 또는 그에 관련된 보상으로 지칭되는 모든 금전 지급 또는 가치이전을 포함하나 이제 한정하지 아니한다);

(ii) B = 7,732,779.<sup>71</sup>

49. 합의서는 “제시 가격”을 57,234 원으로 정의한 반면, 2022 년 4 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로 청구인을 제외한 기타 주주들에게 지급된 1 주당 가액은 제시 가격보다 9,368 원이 높은 1 주당 66,602 원이었다.<sup>72</sup> 따라서, 합의서 제 2.4 조에 규정된 산식(한화 (66,602 원 - 57,234 원) x 7,732,779)을 적용하면,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은 (중재판정문에서 인정한 65,902,634,943 원이 아닌) 72,440,673,672 원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문은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반영하도록 정정되어야 한다.
50.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요구하는 정정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다수의 오타를 제외하고는 상기 정정 사항에 대한 결과를 올바르게 제시하였다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

<sup>70</sup> 청구인의 심리 후 재반박서면, 제 102 항.

<sup>71</sup>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와 삼성물산 주식회사 사이의 주식매수가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2016 년 3 월 15 일, 제 2.4 조, “Top up 지급액” 정의(C-450).

<sup>72</sup> 대법원 2016 마 5394(병합), 2022 년 4 월 14 일(C-782).



중재판정부는 아래 V 절(“결정”)에 명시된 대로 피청구국의 신청의 오타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문의 관련 단락(936, 938 및 948)을 정정한다.

## 2. 피청구국의 해석 신청

51. 동 요청에 적용되는 관련 조항은 “중재판정문의 해석”을 다루는 UNCITRAL 규칙 제 37 조이다. 제 37 조는 다음과 같다:
1. 중재판정문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의 해석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해석은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석은 중재판정문의 일부를 형성하여야 하고, 제 34 조 제 2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52.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계산할 때 사용되어야 할 통화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기를 요청한다.<sup>73</sup>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문 제 961 항에서 청구인이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을 대한민국 원화로 산정하였으므로, “판정 전 이자가 적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었던 판시를 언급한다.<sup>7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문의 주문은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문 제 995(b)항에 미국 달러화로 명시된 금액에 대하여 연 복리 5%의 비율로 판정 전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에, 판정 전 이자를 대한민국 원화 혹은 미국 달러화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만약 판정 전 이자가 원화로 계산되고 미국 달러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환전할 기준일이 판정일 혹은 지급일인지에 관한” 모호함이 발생한다.<sup>75</sup>
53.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세 가지 이유로 중재판정문에는 모호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 이자가 적용되는 통화는 원화라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판정 전 이자가 실제로 원화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중재판정부가 원화에서 미국 달러화로의 적절한 환전일을 “불명확한 점 없이” 판정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급 목적으로 환전되는 기준일에 대한 모호함은 발생하지 않는다.<sup>76</sup> 셋째, 판정 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원화와 미국

---

<sup>73</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3 항.

<sup>74</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6 항, 중재판정문 제 961 항 인용.

<sup>75</sup> 피청구국의 신청, 제 27 항.

<sup>76</sup> 청구인의 답변, 제 25 항.

달러화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문에 대한 해명은 불필요하다.<sup>77</sup> 따라서,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은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또한 정확히 같게 도출됨을 의미한다.”<sup>78</sup>

54.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신청이 중재판정문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지한다.
55.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 이자가 지급되고 판정 전 이자에 적용될 통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점을 주지한다:
  - (a) 중재판정문 제 948 항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으로 인한 청구인의 투자 가치 손실이 68,744,114,123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 (b) 중재판정문 제 952 항에서, 중재판정부는 배상의 지급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 적절한 날이 본 판정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그 날짜에 해당하는 판정 금액은 53,586,931 달러라고 판단하였다;
  - (c) 중재판정문 제 961 항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은 대한민국 원화로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을 계량하였으므로, 적절한 환전일은 판정일이어야 하고 그 이전일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판정 전 이자가 적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 (d) 중재판정문의 주문의 일부인 제 995(c)항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에게 “2015년 7월 16일부터 본 판정일까지 연 복리로 위(b)항의 금액에 대하여 5%의 비율로 판정 전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56. 따라서, 상기 결정에 비추어, 판정 전 이자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 복리 5%의 이자율로 판정 금액인 원화 68,744,114,123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판정 전 이자를 포함한 총 배상액은 중재판정문 제 952 항, 995(b)항 및 995(c)항에 반영된 바와 같이 판정일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변환된다. 따라서, 중재판정문 제 995(c)에서 언급된

---

<sup>77</sup> 청구인의 답변, 제 26 항.

<sup>78</sup> 청구인의 답변, 제 26 항.

“위(b)항의 금액”은 중재판정문 제 952 항에 따라 판정일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로 환산된 원화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sup>79</sup>

57.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 모호함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해석 신청은 기각한다.

## B. 청구인의 신청

58.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손해액에 대한 이자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중재판정부의 의도와 달리 [중재판정문의 근거가 되는] 원칙과 판단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이자에 대한 계산을 정정할 것을 요청한다.<sup>80</sup> 청구인은 제 38 조가 방법론적 오류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지만, 중재판정부가 “방법론적 정정 역시 제 38 조의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동 요청을 구한다.<sup>81</sup>

59. 청구인은 “청구인의 손실에 대한 일부 차감은 2015년 7월 16일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sup>82</sup> 그러나, 청구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계산 방식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순손실액에 대한 이자를 2015년 7월 16일 이후 최종 손실액에 발생하는 이자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년 7월 16일에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는 771,026,741,100 원이었고, 그중 일부만이 몇 개월 내지 몇 년 간, 즉 (i) 2015년 9월 17일부터 25일 사이(179,759,400,000 원), (ii) 2016년 3월 18일(456,620,599,950 원), 및 (iii) 2022년 5월 12일(65,902,634,943 원) 수 회에 걸쳐서 회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2015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실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이자 계산 방식에 대한 오류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중재판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에게 “전부 배상”을 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습니다.<sup>83</sup>

---

<sup>79</sup> 중재판정부는 위 55-56 항에 명시된 금액의 합이 중재판정을 판정 선고 당시의 중재판정부의 분석을 반영하고 있으며, 피청구국의 정정 요청을 수락하기로 한 결정에 비추어 해당 금액이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sup>80</sup> 청구인의 신청, 제 16 항.

<sup>81</sup> 청구인의 신청, 제 12 항.

<sup>82</sup> 청구인의 신청, 제 17 항.

<sup>83</sup> 청구인의 신청, 제 17 항(인용문구 임의삭제).

60. 청구인은 따라서 “청구인의 손해의 산정이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긴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배상한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에 정정을 제안한다.<sup>84</sup> 청구인은 정정 신청서 제 19 항에서는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자가 산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정정 신청서 제 20 항에서는 요청하는 중재판정부의 정정 사항을 제시한다.
61.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요청에는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자신이 “청구인의 손실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채택한 ‘방법론’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5</sup> 피청구국에 따르면, 청구인의 요청은 UNCITRAL 규칙 제 38 조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요청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sup>86</sup>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이자를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68,744,114,123 원으로 산정한 반면, “청구인이 판정 전 이자를 적용하고자 하는 배상액 원금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금액보다 몇 배 더 크다”고 지적한다.<sup>87</sup> 따라서, 피청구국의 견해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손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횡재를 노리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의 원금 손실액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sup>88</sup>
62. 청구인의 신청은 중재판정부 수령일 30 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졌다.
63.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UNCITRAL 규칙 제 38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부의 계산상 오류,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오류 또는 누락을 정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원칙과 결정, 특히 청구인이 전부 배상을 받아야 하고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긴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등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는 것이다.<sup>89</sup> 청구인에

---

<sup>84</sup> 청구인의 신청, 제 18 항.

<sup>85</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3 항.

<sup>86</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3 항.

<sup>87</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8 항.

<sup>88</sup> 피청구국의 답변, 제 9 항.

<sup>89</sup> 청구인의 신청, 제 18 항, 중재판정부 제 961 항 인용.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순손실액(687억 4천만원)이 아닌 청구인이 2015년 7월 16일에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시장가치, 즉 771,026,741,100 원에 근거하여 이자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자 산정 방식의 근거를 변경하고자 요청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산상 오류의 정정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중재판정문의 수정을 구하는 것이다.

64.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정 사항은 UNCITRAL 규칙 제 38조 제 1항의 의미 내에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V. 결정

65. 상기에 비추어,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피청구국의 정정 신청은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중재판정문 제 936 항, 9-10 번째 줄에서, “합의서에 따라, EALP 는 이후 삼성물산으로부터 총 65,902,634,943 원의 ‘추가지급금’을 받았다”라는 문장은 “합의서에 따라, EALP 는 이후 삼성물산으로부터 세전 금액 72,440,673,672 원에 해당하는 총 65,902,634,943 원의 ‘추가지급금’을 받았다”라고 대체하고; 관련 각주 1573 번(“청구인의 심리후 재반박서면, 제 102 항 참조”)은 “청구인의 심리후 재반박서면, 제 102 항; 대법원 2016 마 5394(병합), 2022 년 4 월 14 일(C-782); 합의서, 제 2.4 조(C-450) 참조”로 정정한다;
2. 중재판정문 제 936 항, 12 번째 줄에서, “65,902,634,943 원”은 “72,440,673,672 원”으로 대체한다;
3. 중재판정문, 제 936 항, 12 번째 줄에서, “8,222.50 원”은 “9,368 원”으로 대체한다;
4. 중재판정문, 제 936 항, 14 번째 줄에서, “67,572.50 원”은 “68,418 원”으로 대체한다;
5. 중재판정문, 제 936 항, 15 번째 줄에서, “522,523,208,978 원 내지 약 5,225 억 원”은 “529,061,273,622 원 내지 약 5,291 억 원”으로 대체한다;
6. 중재판정문, 제 936 항, 18 번째 줄에서, “1,727.50 원”은 “882 원”으로 대체한다;
7. 중재판정문, 제 936 항, 19 번째 줄에서, “13,358,357,723 원 또는 약 134 억 원”을 “6,820,311,078 원 또는 약 68 억 원”으로 대체한다;
8. 중재판정문, 제 938 항, 2 번째 줄에서, “68,744,114,123 원”은 “62,206,067,478 원”으로 대체한다;
9. 중재판정문, 제 938 항, 3 번째 줄에서, “13,358,357,723 원”은 “6,820,311,078 원”으로 대체한다;

10. 중재판정문, 제 938 항, 2-4 번째 줄에서, “68,744,114,123 원 내지 약 687 억 원(매수청구 주식 13,358,357,723 원 + 비매수청구 주식 55,385,756,400 원)”은 “62,206,067,478 원 내지 약 622 억(매수청구 주식 6,820,311,078 원 + 비매수청구 주식 55,385,756,400 원)”으로 대체한다;
  11. 중재판정문, 제 948 항, 2 번째 줄에서, “68,744,114,123 원”은 “62,206,067,478 원”으로 대체한다;
  12. 중재판정문, 제 952 항, 4 번째 줄에서, “53,586,931.00 달러”는 “48,490,438.00 달러”로 대체한다;<sup>90</sup> 그리고
  13. 중재판정문, 제 995(b)항, 2 번째 줄에서, “53,586,931.00 달러”는 “48,490,438.00 달러”로 대체한다.
- (b) 피청구국의 중재판정문 해석 신청은 기각한다;
- (c) 청구인의 중재판정문 정정 신청은 기각한다; 그리고
- (d) 그 밖의 모든 구제 신청은 기각한다.

\*\*\*

---

<sup>90</sup> 중재판정문에서와 같이 OANDA 웹사이트의 “환율 변환기” 도구를 사용하여 계산된 미국 달러 금액.

중재지: 영국 런던

일자: 2023. 9. 1

중재판정부

---

Mr. Oscar M. Garibaldi

---

Mr. J. Christopher Thomas KC

---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